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-138호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설·강풍·풍랑 피해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19일
우정사업본부장

‘대설·강풍·풍랑’ 피해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

1. 지원대상 : 특별재난 선포지역(7개 시·군, 4개 읍·면) 우체국금융고객

광역시·도	시·군·구	읍·면·동 단위
경기도	평택시	-
	용인시	-
	이천시	-
	안성시	-
	화성시	-
	여주시	-
충청북도	음성군	-
충청남도	-	천안시 성환읍, 입장면
강원도	-	횡성군 안흥면, 둔내면

2.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

가. 우체국예금 취급(타행계좌송금, 통장 재발행, ATM 현금인출) 수수료 면제

○ 면제기간 : '24. 12. 19.(목) ~ '25. 6. 30.(월) [약 6개월]

※ 인터넷·스마트뱅킹, ATM은 '24.12.23.(월) ~ '25.6.30.(월) 면제

※ ATM은 선포지역 우체국기기에서 우체국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
(타행카드·타행기기를 이용한 경우는 제외)

※ 우체국계좌 보유고객에 한함

나. 우체국보험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/사고보험금 신속지급

○ 접수기간 : '24. 12. 19.(목) ~ '25. 3. 31.(월)

○ 유예기간 : '24. 12. 19.(목) ~ '25. 6. 30.(월) [약 6개월]

○ 유예기간 경과 후 납입방법 : '25. 7월 ~ '25. 12월 중 분할 또는 일시 납입

3. 접수방법

가. 구비서류

○ 우체국예금 고객

- 신분증(실명확인증표)

* 타행계좌 송금, 통장 재발행 시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로 면제대상 확인

○ 우체국보험 고객

- 보험료(환급금대출이자) 납입유예 신청서(우체국 비치)

- 신분증 및 시청,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

나. 접수처 : 전국 우체국